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3. 4. 3.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3.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안 제1조 ~ 제5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안 제5조 ~ 제8조)

다. 사후관리 등(안 제9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나. 예산조치: 추후 사업대상 발생 시 확보 예정

다. 합 의

1)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

2)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복지지원과-10361호(2023.3.13.)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307호

가) 예고기간: 2023. 3. 2. ~ 2023. 3. 22.(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고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소규모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소규모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소규모상가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이하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라 한다)에 침수흔적이나 침수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7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소규모상가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소규모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소규모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성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관련조항: 제8조(지원기준)

나. 관련조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7백만원 이하

다. 사업대상: 침수피해 발생 주택 및 상가 10개소, 공동주택 2개소

○ 사업규모: 18,000천원

- 주택 및 상가: 1백만원/세대(상가)당 × 10개소 = 10백만원

※ 타 지자체 주택 및 상가당 80~120만원 지원(평균 1백만원/개소)

- 공동주택 : 4백만원/1개 단지 × 2개소 = 8백만원

※ 타 지자체 공동주택 1개소당 약 4백만원 지원(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안전관리과장 윤 경 병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